#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허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00

발의연월일: 2021. 4. 29.

발 의 자:허 영·김병주·김승원

김영배 · 박상혁 · 박홍근

송기헌 · 오영환 · 우워식

윤후덕 · 이광재 · 이규민

이수진 · 이양수 · 이용선

이해식 · 임호선 · 천준호

홍성국 의원(19인)

## 제안이유

강원도는 6·25전쟁 휴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가 설정되면서 그 관할구역이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고, 이후 민간인통제구역이 설정 되어 군사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도민 생활의 불편과 지역경제의 위축 이 장기화되고 있음.

또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림, 수자원 및 국립공원 등의 환경에 대한 규제가 강하여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뎌 낙후도가 심화되고 있음.

이에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토 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1조).
- 나. 강원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 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 다. 강원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 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2조).
-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강원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 마.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함(안 제16조).
- 바.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 발전기금을 설치함(안 제19조).
- 사. 강원자치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평화특례시 지정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 법률 제 호

##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 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 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제6조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관할구역에만 적용한다.
-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입법·행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운영목표와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강원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국가는 이 법 시행에 따라 폐지되는 종전의 강원도가 누리던 행정상·재정상의 이익을 강원자치도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조(강원자치도의 책무) ①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②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 법의 취지에 맞게 강원자치도의 조례(이하 "강원자치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강원자치도는 강원자치도의 성과목표와 평가에 관하여 국무총리와 협약(자치경찰과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등의 결과가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 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 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강원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 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이 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강원평화특별자치도지사(이하 "강원자치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강원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6조(강원자치도의 설치) ① 정부의 직할로 강원자치도를 설치한다.
  - ② 강원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 ③ 강원자치도는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 제7조(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강원자치도가 지역발전과 국 토균형발전 및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이 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 2. 강원자치도의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및 사무처리 편의 증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 3. 강원자치도에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
  - 4. 제4조제3항에 따른 협약체결 및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 5. 제28조에 따른 평화특례시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 6. 강원자치도의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개정 등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강원자치도지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강원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은 각각 동수로 한다.
- 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장관으로 한다.
- ④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 1. 강원자치도지사
- 2. 강원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강원자치도의 부지사 1명
- 3. 강원자치도지사가 추천하는 강원자치도의 관할 구역 내 시장 또 는 군수 2명
-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
- ⑤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1. 도시계획·개발 및 지방자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 사업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4. 그 밖에 강원자치도의 발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람
- ⑥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둔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실무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지원위원회 심의 결과의 조치 등) ① 지원위원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 통보와 타당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강원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하는 등 행정적·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강원자치도에 대하여 그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과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종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강원자치도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제10조(강원자치도 사무의 위탁 특례) ① 강원자치도지사 또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강원자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와 법령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그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무위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법」 제168조의 사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1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강원자치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 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 ②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 수의 3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강원자치도조례로 정 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제12조(조직 특례) 「지방자치법」 제125조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구규모·면적·도시발전단계 등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제13조(국가와 강원자치도 간 인사교류 및 파견) ① 강원자치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

- 관, 공공단체, 국외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에도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한다.
- ④ 국가는 국가정책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고 국가와 강원자치도 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강원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14조(지역인재의 선발채용) ① 강원자치도지사 또는 강원자치도교육 감은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인재를 선발하여 3년 의 범위에서 수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그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과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습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 지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보 임용을 면제한다.
- 제15조(재정 특례) ① 「지방교부세법」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 정안전부장관은 강원자치도 설치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 10년 동안 강원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있다.
-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강원자치도 설치 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10년 동안 강원자치도에 교부하는 보통교부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다.
- 제16조(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에 관한 특례) 국가는 강원자 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각종 국가보조사 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한다.
- 제17조(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에 관한 특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강원자 치도 내의 카지노사업자(이하 "카지노사업자"라 한다)는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매출액의 100분의 7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 제18조(주민참여 예산제도) ① 강원자치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한다.
- 제19조(강원자치도 발전기금의 설치 등) ①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역 발전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원자치 도 발전기금(이하"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의 출연금
  - 2.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 3.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납부금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발전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 ④ 강원자치도에서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⑤ 카지노사업자는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매출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⑥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민 간인 통제선의 이북지역으로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발전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발전기금의 용도) 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의 군사기지 및 군 사시설 보호구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 2.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의 정 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 3.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 사업
- 4. 그 밖에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 제2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① 「지방자치법」 제190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 제81조에도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24조에 따라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지사 소속으로 감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은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원 자치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2명은 강원평화특별자치 도의회(이하 "강원자치도의회"이라 한다)에서, 2명은 강원자치도교육 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 ⑤ 강원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
- ⑦ 그 밖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자 치도조례로 정한다.
- 제22조(감사위원장) ① 감사위원장은 강원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강원자치도지사가 임명한다.
  - ②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 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은 일반직·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 ③ 그 밖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한다.
- 제24조(자치감사계획 등)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감사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치감사계획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이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을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감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장,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및 강원자치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강원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는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1. 감사대상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 관련 자료의 제출, 물품 등에 대한 봉인,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등
- 2. 제1호 외에 감사와 관련된 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 출석 또는 답변과 관련 자료의 제출
- ⑥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강원자치도의 소속 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 제25조(자치감사결과의 처리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강원자치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결과는 강원자치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통보되는 자치감사 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 ③ 강원자치도지사 또는 강원자치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또

- 는 통보받은 자치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6조(징계·문책 사유의 시효정지 등)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강원자치도지 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강원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강원자치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 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개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제27조(비밀유지의무) 감사위원회의 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 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평화특례시 지정) ① 강원자치도지사는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에따라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이하 "평화특례시"라 한다)으로

지정하도록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평화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평화특례시 지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평화특례시 지원) 국가와 강원자치도는 평화특례시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 2. 평화 및 통일 교육 관련 시설 설치 및 지원
  -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연구소 또는 기관·단체의 유치 및 지원
  - 4. 평화·협력 관련 국제회의 등의 유치
  - 5. 그 밖에 남북협력, 평화, 통일에 관하여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사업
- 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강원도의 폐지) 종전의 강원도를 폐지한다.

- 제3조(종전의 강원도의 폐지에 따른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강원도지사(강원도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인가·허가 등의 행위 및 그에 대하여 행한신고·신청 등의 행위는 각각 강원자치도지사(강원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위 및 그에 대한행위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의 조례·규칙은 이 법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 및 위원은 이 법에 따른 강원자치도 소속의 직원 및 위원이 된다.
  -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강원도의 사무와 강원도지사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그 소관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강원자 치도지사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각각 이를 승계한다.
- 제4조(강원도지사 및 강원도의회의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출된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의원은이 법에 따른 강원자치도지사, 강원자치도의회의원으로 보고, 그 임기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5조(조례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에서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강원도가 제

정할 수 있다.

②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조례는 이 법에 의한 강원자치도조 례로 보되, 그 조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